

한·일 간 ‘契’와 ‘契約’의 비교 연구*

- 12-15세기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

金普漢**

bhkim701@hanmail.net

Contents

1. 머리말
2. 고려·조선의 ‘契’와 무로마치의 ‘契約’의 전개 양상
 - (1) 고려·조선 ‘契’의 변화와 전개
 - (2) 중세 일본의 ‘契約’ 출현과 그 배경
3. 한·일의 ‘契’와 ‘契約’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비교
4. 맺음말

Abstract

This study is the comparison between the Sinomatsuura Ikki Keiyaku of Japan which appeared in the 14th century the Munmugye and Hyangdogye of Korea which show after the 12th century. In other words, it is the comparison between the Gye and the Keiyaku that existed in Korea and Japan at the same age and the study of its social function.

The Gye is in Korea and the Keiyaku is in Japan. But its functions are incredibly similar each other. One thing in common is that it is the voluntary social organization of all members. And, it is common that the organization set up through the promise and agreement of members. Also, it has in common that the Buddhism is the religious agreement and both participation and breakaway are free.

Let's have a look at the difference. The Keiyaku in Japan included the paragraph that swore the loyal to Shogun. This is the pledge of military fealty and submission that is the character in Japanese medieval society. The Gye in Korea is deeply related to the daily life and persue the game and the wish.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A00097).

**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Key Words : 高麗、朝鮮、室町、鎌倉 契、契約、一揆、族的 結合、松浦黨一揆
 (Korea dynasty, Joseon Dynasty, Muromati, Kamakura, Gye,
 Keiyaku, Ikki, Simomatsura Ikki, Family connection)

I. 머리말

근래 한·일간에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물질·인적 왕래가 활발하고 일본 열도에서 한류의 붐이 크게 일어나면서, 양국 간의 사회적 이해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우리가 전근대 한·일의 사회적 특질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특질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정치·사회·문화 등의 인문·사회적 요소와 여기에 지리적 요소까지 추가하면 실로 다양한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 여기에 역사적 사실까지 반영하면 실로 감당키 어려운 방대한 양의 구성 요소가 내재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사회적 특질 연구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로 차별적 요소를 선택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차별적 요소만이 존재할까. 작금 동아시아 세계에서 민족적 대립과 국가적 대결의 장벽을 허물어 가려는 분위기에 즈음하여, 우리는 한·일간 공통적 사회 특질 연구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단편적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한·일 간의 사회 특질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다룰 수가 없다. 그러나 과거 특정 시기에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존재했던 공통의 사회 요소를 찾아 상호 비교하는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 한 가지 공통의 사회적 요소를 찾는다면,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와 고려·조선시대에 ‘契’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초기에 출현한 ‘契約’이 존재한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契’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계약과 맹서(盟誓)를 위해서 행하는 행위, 즉 ‘契約’을 의미한다.¹⁾ 어원적으로 ‘契’와 ‘契約’은 한·일 간의 공통된 사회적 특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조선의 ‘契’와 무로마치 초기의 ‘契約’에 주목하고 싶다. 왜냐하면 ‘계’와 ‘계약’은 전근대 사회 성격을 반영하는

1) 白川静(1984) 『字統』平凡社, pp.229-230 참조.

사회 요소로서 한·일 사회에서 동질성을 이해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근대 한국과 일본에서 ‘契’와 ‘契約’을 통한 사회 비교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소재이다. 그러나 기존의 일본사 연구에서는 ‘契約’을 일본의 사회적 특질로 파악하기보다 ‘一揆’의 조건으로만 취급하려는 경향이였다. 1910-30년대 一揆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중세 무사들의 자치적인 조직체, 공화적인 조직체로서의 一揆의 역할에 주목하고, 一揆를 黨的 결합체로 파악하는 연구가 주류였다.²⁾ 이러한 연구들은 ‘契約’의 사회적 특질보다 一揆의 역할에 더 주목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1980년대에 접어들어 민중사적 측면에서 권력과 대비되는 一揆의 역할에 대한 완결적 연구 성과를 이끌어 냈다.³⁾

또 한편으로는 一揆의 黨的 성격의 분석에서 탈피하여, ‘契約’의 법제사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一揆가 자율적 집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契約’이 갖고 있는 법제적 기능과 ‘共同의 場’ 형성이라는 세부적인 연구 성과를 토출하였다.⁴⁾

이처럼 기존의 연구가 재지무사들의 一揆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비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국사적 시야에서 본 일본 중세의 특수성에서 탈피하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동질적 사회 특질로 보는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에서 ‘契’에 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중·후기 ‘契’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50-60년대 이후에도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양적·질적 성과를 일구어 냈다.⁵⁾ 1970-80년대에 들어와서 ‘契’와 유사한 조직(두레,

2) 牧野純一(1914) 『松浦黨の研究』『歴史地理』24卷 5号; 『松浦黨の研究(下)』『歴史地理』24-6; 長沼賢海(1934) 『松浦黨の發展及び基の党的生活』『史淵』10・11; 舟越康寿(1938) 『隅田莊と隅田黨』『經濟史研究』20; 瀨野精一郎(1958) 『松浦黨の一揆契約について - 未組職軍事力の組織化工作 -』『九州史学』10.

3) 青木美智南 外 編著(1981) 『一揆』(1-5卷), 東京大学出版会.

4) 藤木久志(1968) 『室町戦国期における在地法の一形態』『聖心女子大学論叢』31・32; (1967) 『戦国法形成過程一考察』『歴史学研究』323号; 勝俣鎮夫(1976) 『戦国法』『岩波講座日本歴史』中世4; (1979) 『戦国法成立史論』東京大学出版会; 村井章介(1975) 『在地領主法の誕生 - 肥前松浦一揆 -』『歴史学研究』419号; (1976) 『今川了俊と上松浦一揆』『日本歴史』338号; 網野善彦(1987) 増補 『無縁・公界・楽』- 日本中世の自由と平和 -, 平凡社選書.

5) 김병하(1958) 『契의 史的 考察』『경상학보』7, 중앙대학교; 황철산(1961) 『향도(香徒, 郷徒)에 관하여』『문화유산』61-2; 김삼수(1864) 『韓國社会經濟史研究』박영사.

품앗이, 향약, 香徒, 寶, 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왔다. 특히 개별 연구자들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연결하여 ‘香徒’·‘契’·‘文武契’·‘耆老會’ 등의 성격을 ‘契’의 범주 속에 넣어 목적 지향성을 갖는 조직체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⁶⁾ 이후 ‘契’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총괄적인 연구서가 나오면서 완결성을 갖기에 이르렀다.⁷⁾ 이처럼 한국에서 ‘계’의 연구는 일본의 ‘계약’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 중심의 일국사적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문화권 안에서 국가 간의 공통성이나 보편성을 추구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 간의 ‘契’와 ‘契約’이라는 사회적 조직을 통하여 양국의 공통적 사회 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에서 공통된 사회적 특질의 출현 배경을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사의 범주에서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契’와 ‘契約’의 사회적 기능과 그 역할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II. 고려·조선의 ‘契’와 무로마치의 ‘契約’의 전개 양상

1.1. 고려·조선 ‘契’의 변화와 전개

한국에서 ‘契’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 초 이수광은 『芝峰類說』에서 “우리나라의 풍속에 모든 鄉邑坊里에서 契를 만들어 서로 바로잡고 단속하였는데 이를 香徒라고 한다. 또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김유신이 15세에 화랑이 되자 세상 사람이 자진해서 복종하여 오니 龍華香徒라고 불렀다.”⁸⁾라고

6) 李海濬(1983) 『埋香信仰과 그 主導集團의 性格』, 『金哲堉博士華甲記念 史學論叢』 지식산업사 ; 채웅석(1989) 『고려시대 향도의 사회적 성격과 변화』, 『국사관논총』2, 국사편찬위원회 ; 김필동(1985) 『‘契’연구의 성과와 반성, 재정향-‘契’의 사회사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사회학 연구』8,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 (1986) 『삼국-고려시대의 香徒와 契의 기원』,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4(한국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 지성사 ; (1987) 『고려시대 계의 단체개념』,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경산최홍기교수회갑기념논총』(현대 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한길사 ; (1988) 『조선시대 계의 조직구조적 성격과 그 변화』, 『논문집』(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5-1.

7) 김필동(1992) 『韓國社會組織史研究』 일조각.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 ‘향도’의 출현이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향도의 중심에는 ‘契’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향도’ = ‘계’이고, ‘향도’는 김유신의 강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자진해서 만든 사회적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고려에서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향도가 결성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002(목종 5)에 나주의 팔흠도(八歛島)에서 道俗香徒 300여명이 향도를 만들어 埋香이라는 신앙 활동을 행하고 있다.¹⁰⁾ 또 醴泉 開心寺石塔記의 명문에 따르면, 1010년(현종 1) 3월 彌肋香徒 42명과 椎香徒 95명이 약 1년 동안 석탑의 건립에 참여하고 있다.¹¹⁾ 이것들은 고려에서 불교가 성행하던 시기에 신도들이 佛事를 일으키기 위해서 郡縣의 규모로 조직한 향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佛事를 목적으로 결성된 향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당하는 내용도 함께 나타난다. 고려에서 982년(현종 원년)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리면서 당시의 사회적 폐단의 하나로 “세상 풍속이 덕을 쌓는다(種善)는 명목으로 각자의 소원에 따라 사찰을 건축하고 있는바 그 수가 심히 많고…(중략)…州郡의 높은 자리에 앉은 아전들을 권유하여 공사에 백성들을 징용하기를 나라의 부역보다도 더 급하게 부리므로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¹²⁾ 또한 1056년(문종 10) 왕이 조서를 내려 “지금은 나라의 락을 기피하려는 무리들(避役之徒)이 불교에 이름을 걸어 놓고는 재부를 축적하여 사생활에 마음을 팔고 있다. 이리하여 농업과 축산으로 직업을 삼고 상업을 행하고 있다. …(중략)… 장사치들과 결탁하여 물건을 매매하고 잡인들과 어울려서 술주정을

8) 李晔光 『芝峰類說』 권2 “我國之俗 凡中外鄉邑坊里 皆作契 以相糾檢 謂之香徒 按與地勝覽 金庾信年十五爲花郎 時人服從 号龍華香徒云 今香徒之稱蓋本於此.”

9) ‘계’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 규정에서 황철산은 ‘민간의 사회적 조직체’, 김삼수는 ‘공동체’, 김필동은 ‘자발적 결사체’로 규정하였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향도’와 ‘계’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황철산 『향도(香徒, 鄉徒)에 관하여』; 김삼수 『韓國社會經濟史研究』; 김필동 『고려시대 계의 단체개념』).

10) 『세종실록』 권15 세종 4년(1422) 2월 29일, “太上王遣成均直講權克和 掘沈香于羅州八歛島 先是 克和倅羅州時 因察塩盆到八歛島 見短碣在草莽間 其銘略曰 “統和二十年 道俗香徒三百余人 爲沈水香事 在衝見正南百步 限百年” 克和写其文以進 故遣之 竟不得而還.”; 埋香信仰과 관련해서 李海濬의 연구가 있다(『埋香信仰과 그 主導集團의 性格』).

11) 『韓國金石遺文』 『醴泉開心寺石塔記』.

12) 『고려사』 원 93 열전5, “世俗以種善爲名各隨所願營造仏宇其數甚多 又有中外僧徒欲爲私住之所競行營造普勸州郡長吏徵民役使急於公役民甚苦之願嚴加禁斷以除百姓勞役.”

하며 놀이에 뒤섞이어 佛家の 행사를 모독하고 있다. 속인의 모자(冠)를 쓰고 속인의 옷을 입으며 사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서 복장구와 깃발을 갖추고 촌락과 시정으로 다니면서 사람들과 난투하여 피투성이가 된다.”고 하면서 법률로서 처벌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131년(인종 9) 陰陽會議所에서 “근래에 승려, 속인, 잡류들이 떼를 지어 萬佛 香徒라는 명목으로 염불도 하고 불경도 읽으며 허황한 짓을 하고, 혹은 서울과 지방의 사원에서 승려가 술과 안주를 팔며 혹은 무기를 들고 사악한 짓을 일삼고 날뛰면서 유희하는 등 풍속을 문란케 하고 있으니, 어사대와 금오위로 하여금 이를 순찰하고 금지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보고하고 있다.¹³⁾ 이에 대해서 인종이 조서를 내려 그렇게 하도록 승인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처럼 향도 모임이나 불교의 행사에 대해서 중앙 권력 측에서는 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일반적으로 향도 모임이나 불교의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으로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佛會의 모임은 신앙을 통해 집단적인 유희를 발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속인, 잡류들의 퇴폐적이거나 반항적인 양태에 대해서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로 파악했던 것 같다. 기본적으로 사료에서는 佛會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모두 승려만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광범위한 계층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던 상황에서 벌어졌던 사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향도 모임을 비롯하여 불교 신앙의 집회, 행사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 기회에 자연스럽게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고려시대 지방에서의 교환경제는 주로 郡縣市의 성격을 지니며 부정기적으로 개설되는 場市를 통해 이루어졌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시가 지나는 한계를 보완하는 교환경제의 場으로서 佛會를 통한 상거래의 존재와 기능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¹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불교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

13) 『고려사』 권85 지39 형벌2 금령, “仁宗九年…六月 陰陽會議所奏 近来僧俗雜類聚集成群 号 万仏香徒 或念佛誦經 作為詭誕 或内外寺社僧徒 壳酒鬻葱 或持兵作惡 踴躍遊戲 乱常敗俗 請 令御史台金吾衛 巡檢禁止 詔可.”

14) 채웅석(1989) 『고려시대 향도의 사회적 성격과 변화』, p.113.

되었을 것이고, 이곳을 중심으로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12세기 이후 고려 ‘향도’는 사회변동 속에서 점차 그 성격을 달리하여 나타난다. 고려 초기에 향도가 불상, 석탑 등의 조성에 치중했던 반면에, 이후에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들고 염불, 燒香, 齋會, 會飲, 葬禮 등의 다양한 활동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⁵⁾ 예를 들어 『고려사』 『심우경전』에는 향도의 새로운 정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契를 결성하고 향불을 피우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香徒라고 불렀다. 서로 윤번으로 연회를 열고 남녀노소가 차례로 모여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이것을 향도연(香徒宴)이라고 불렀다.”¹⁶⁾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에 불사를 치중했던 ‘香徒’가 ‘契’의 기능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香徒’가 일종의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성격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조선 중기 이수광의 『芝峰類說』에서 설명하고 있는 ‘향도’ = ‘계’의 정의가 이처럼 고려 말에 탄생되어 조선으로 이어져 내려온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향도는 龍華香徒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 아래에서 結社하여 움직여 오다가,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계’의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¹⁷⁾ 또 『심우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전한다.

“밀직 朴天常이 어느 때 계림 고을을 통과하였는데 윤승순이 술을 차리고 그를 위로하였다. 이때 진사 李桂芬 등 두 명이 지나가다가 손님 대접할 교자상이 둘러 놓인 것을 보고 비웃어 말하기를 ‘鄉徒宴 이로구나’라고 하였다. 윤승순의 門客이 이 말을 고하니 윤승순이 노하여 이계분 등을 가두었다가 데려 갈 때에 그 일을 심우경에게 위촉했더니 심우경이 발을 가르고 기름으로 지지는 등의 고문을 하여 오래지 않아 두 사람이 죽었다.”¹⁸⁾

15) 채웅석(1989) 『고려시대 향도의 사회적 성격과 변화』, p.116 참조.

16) 『고려사』 권122 열전35 沈于慶伝, “国俗 結契燒香 名曰香徒 相与輪設宴會 男女少長序坐 共飲 謂之香徒宴.”

17) 김상기(1984) 『고려시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p.784.

18) 『고려사』 권122 열전35 沈于慶伝, “又密直朴天常嘗過雞林 承順置酒慰之有 進士李桂芬等二人 見賓校環列譏之曰 鄉徒宴也 承順門士以告承順 怒囚桂芬等 及見代以其事屬于慶 于慶裂足炮烙二人尋死 承順聞之慘 然尽逐其門士.”

이 기록은 중앙에서 온 관리를 대접하기 위해 베푼 성대한 연회를 ‘향도연’ 같다고 비유했다는 이유로 진사 두 사람을 심유경이 처단하였다는 기사이다.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 향도연 풍속은 일반인 사이에 일상적으로 전개되었던 서민적인 풍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배자 계층이 여는 연회가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민간의 풍속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향도계’가 ‘齋’의 활동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고려사』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1339년(충숙왕 8) 아홉 가지의 금령을 공포하는데, 그 여섯 번째 조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성안 부녀들이 尊卑와 노소를 가리지 않고 香徒를 맺고 齋를 올리고 등불을 켜며 문란한 행동을 범하므로 이것을 금하는 법령을 공포하고 있다.¹⁹⁾ 반면에 1342년(충혜왕 3) 충혜왕이 神孝寺에 갔을 때, 이 절의 등축잡이들이 향도를 결성하여 祝壽齋를 베풀었고, 이때에 왕이 그 齋筵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²⁰⁾ 이 향도계는 구성원들이 단순히 유희를 즐기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다. 종교적인 염원을 담아 구성원 밖에 있는 충혜왕에게 무병장수의 염원을 담아 향연을 베풀고 있었다. 이것은 ‘향도계’의 구성원과 비구성원을 구분하지 않고 포용하는 범사회적 인식이 그 바탕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고려의 ‘계’는 사회적 폐단으로 작용한 일면도 있었겠지만, 민중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일반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고려의 국교가 불교이었고 무속과 유불선의 복합적 종교도 존재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종교적 의식과 유사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다. 또 남녀노소가 차례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술을 나누어 마시며 香徒宴를 베풀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서민들의 유희와 친목을 공유하는 모임의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고려의 ‘契’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사회적 조직체였으므로 엄밀하게 계약적 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契’는 특수한 목적을 지향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지속적인 結社 모임이

19) 『고려사』 권85 지39 형벌2 금령, “忠肅王八年五月 …城中婦女 無尊卑老少 結為香徒 設齋点 燈 群往山寺 私於僧人者聞 或有之其齊民 罪坐其子 兩班之家 罪坐其夫.”

20)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 3년 6월조, “甲寅 幸神孝寺 燈燭輩 結香徒 設祝壽齋 於是寺王押座齋筵.”

었다. ‘契’가 자발적인 모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처럼 향촌에서 자율적 성질을 내포하는 조직체의 모임이 고려시대 ‘契’의 특징이었다.

조선에서도 ‘香徒契’의 활동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건국 초기 1393년(태조 2) 전국이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었을 때 도평의사사에서 태조에게 상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훗날의 걱정을 돌보지 않고서 神에게 제사하고, 香徒契를 열어 소비하는 것이 적지 않고, 또 州郡의 수령들이 손님을 전송하고 영접하는 일로 인하여 소비하는 것이 많으니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²¹⁾ 또 1439년(세종 21) 사간원에서 의창을 보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서, 귀신 제사나 향도계의 모임에서 성찬을 베풀어 술과 고기를 많이 차리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 곡식의 소비와 재물의 낭비가 한도가 없으니 엄중하게 다스릴 것을 진언하고 있다.²²⁾ 이것은 조선까지 이어져서 향도계의 모임이 지나치게 과한 성찬으로 인해 물자를 과소비하므로 금해야 한다는 사간원의 진언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조정에서 금령의 제안은 그 이면에는 민간에서 향도계가 성대하게 널리 유행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향도계가 연회의 기능뿐 아니라 민간의 장례의 풍습에서도 역할하고 있는 예가 있다. 1398년(태조 7) 12월조에 都堂에서 백성들이 부모 장사날에 향도를 모아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부는 것이 장례의 예속에 어긋나므로 죄로 다스릴 것을 진언하고 있다.²³⁾ 그러나 1423년(세종 5) 국가의 차원에서 향도를 활용해서 장례를 권장하는 사례도 있다.

사람이 역질에 걸려 죽으면, 혹은 산간에 갖다 놓고 풀로 덮어 장사하고, 혹은 싸서 나무 가지에 매달아 두었다가, 지금 어느 마을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香徒들과 결탁하여 매장하게 하는데, 자손이 있고 부유한 집의 장사에는 다투어 모

21)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1393) 11월 28일조, “都評議使司以救弊事宜, 條陳上言…五日今歲諸道 因早年荒 如不早凶 飢饉荐臻 且無知之民 不顧後患 以祀神 香徒契内等事 糜費不小 州郡守令亦因賓客送迎 糜費亦多 願自今冬 供上及祭醮 上國使臣宴享外 禁酒.”

22) 『세종실록』 권87 세종 21년(1439) 10월 10일조, “加以神祀香徒契内之會 爭設盛饌 以酒肉之多 觀視之美 其糜穀費財 罔有紀極 飢饉隨至 告糶日急.”

23)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1398) 12월 29일조, “外方之民 其父母葬日 聚隣里香徒 飲酒歌吹 曾不哀痛 有累禮俗 乞自今 毋襲前非 違者痛理.”

여들어 묻어 주고 있으나, 자손도 없고 가난한 집 장사에는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않아서, 혹은 산불에 사체가 타기도 하고, 혹은 狐狸가 뜯어먹기도 하여,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손상되고 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곤궁한 사람의 장사도 전부 향도에게 붙여, 이를 감독하여 매장하도록 할 것이다.²⁴⁾

이것은 前 知順安縣事 朴甸이 민폐를 구제하기 위해 올린 48조의 상소 중에서 의정부에서 논의를 거쳐 시행할 만한 것을 골라 세종에게 올린 9개의 조항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향도가 중심이 되어 향촌에서 사회적 조직체를 결성하고, 장례시에 상호 부조행위가 전면이 부각되는 향도가 조선 사회 전반에 널리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향도가 국가의 역할을 징발하는 단위로 활용되었던 예가 존재한다. 1426년(세종 8) 우사간 朴安臣 등이 중국 사신을 영접할 때, 개최하는 연회에 소요되는 물자를 시정의 공인·상인과 각 관청의 노비 및 里의 香徒에게 맡길 것을 상소하고 있다.²⁵⁾ 또 1429년(세종 11)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한 琉球國人에게 棺과 종이를 주고 한성부에서 향도를 모아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²⁶⁾ 이처럼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조직된 향도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장례의식의 매장에 동원되고 있는데, 국가나 관리가 쉽게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체이며 기본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존재하였던 조직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는 ‘향도’, ‘향도계’ 등의 별칭으로 부르고, 불교의 행사, 齋會, 會飲, 葬禮 등을 목적으로 민간에서 결성된 사회적 조직체였다. 즉 고려와 조선의 ‘계’는 어떤 목적을 수행·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合意(約束)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비교적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모임(단체)이었다.²⁷⁾ 이것은 12세기 이후 농민층의 분화과정에서 몰락한 농민

24) 『세종실록』 권22 세종 5년(1432) 12월 20일조, “人有疫疾而死 或草葬山間 或裹置木枝 今里里人人 皆結香徒而埋葬之 然有子孫富隣之葬 爭集埋之 無子孫貧隣之葬 置之不顧 或為山火所燒 或為狐狸所食 致傷和氣 願自今窮人之葬 全屬香徒 督而埋之.”

25) 『세종실록』 권32 세종 8년(1426) 4월 12일조, “朝廷使臣迎接之時 結彩繡禮之備 一委於成衆 愛馬 市井工商、各司奴婢、各里香徒…”

26) 『세종실록』 권45 세종 4년(1429) 9월 6일조, “禮曹啓 今物故琉球國人理馬加羅 請給棺及紙二十卷 令漢城府聚香徒收葬之 立標 略設掩壙奠 從之.”

27) 김필동(1992) 『고려시대 계의 단체개념』, p.429.

이 발생하는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확보해 가는 소농민들이 자기의 기반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촌공동체를 재구성할 필요성에서 나타난 것이었다.²⁸⁾ 그리고 한국 사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발전해 온 하나의 사회관습의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結社 모임으로 정의를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의 ‘契’가 조직되고 운영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존재했다. 먼저 ‘계’에 가입과 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자신의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계’의 구성원 간에 실질적으로 평등한 원칙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계’ 구성원의 자율성이 조직 구성의 원리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

1.2. 중세 일본의 ‘契約’ 출현과 그 배경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중엽에 걸쳐서 일본 중세의 백성들은 年貢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非法을 일삼는 地頭나 代官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주에게 百姓 申狀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이 작성한 일종의 선언서와 같은 起請文²⁹⁾이 영주에게 제출되었다. 그리고 특별한 관습으로 一味神水가 거행되었다.

이 때 起請의 神水を 마시는 행위는 백성 일동이 일치해서 행동한다는 뜻을 起請文에 기재하고, 참가자 전원이 連署한 후, 그 起請文을 태운 재를 물에 타서, 그 물 예컨대 神水を 일동이 나누어 마시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사를 서약하는 방법이었고, 神水を 마시는 것으로써 단결을 강조하였다. 일치해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一味神水を 마신다고 하였다.³⁰⁾

一揆는 이러한 일련의 전개 과정 속에서 성립하였다. 우선 어떤 목적을 가진

28) 채웅석(1989) 『고려시대 향도의 사회적 성격과 변화』, p.125.

29) 起請이라는 것은 본래 일을 기획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상부(지배자)에 청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문서를 起請이라고 불렀다(佐藤進一(1971) 『古文書学入門』 法政大学出版局, p.227). 그러나 起請文은 百姓申狀과 마찬가지로 領主의 일방적인 강제보다 농민의 주체성에 의해 기록된 起請文이 있었다고 보는 入間田宣夫의 견해가 있다(入間田宣夫(1986) 『百姓申狀と起請文の世界』 東京大学出版会, pp.39-40).

30) 佐藤進一 『古文書学入門』, p.238.

사람들이 결집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하였는데, ‘多分之義(다수의견)’에 따라 그 방향을 결정하였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해서 그 결정의 준수를 서약하는 連署起請文을 작성하는데, 구성원이 連判하고 一味神水を 하였다. 이리하여 하나의 목적 집단이 성립하였는데, 이것이 ‘一揆’이다. 중세의 一揆는 다양한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였다. 一揆를 형성하는 기반은 동일 신분 조건의 촌락이라든가 寺社 조직, 혹은 무사의 동족 집단 내지는 주변의 地緣的 집단 등이었다. 이러한 기반을 가진 일상적인 조직이 개개인의 의식 변화와 함께 一味神水라는 행사를 통해서 비밀상적인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강고한 단결을 갖는 一揆라는 조직으로 변신하였다. 이 조직은 그 목적에 대한 책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로써 구성원이 평등하다고 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두고, 구성원의 권리에서 평등을 보장하였다. 또 구성원을 내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일상적인 조직과는 다르게 지도자를 선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一揆라는 말은 一味同心의 결합·조직 혹은 그 행동에 대한 명칭으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 一味同心에 一揆라는 명칭이 더해진 것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만이 아니고 一揆의 새로운 전개로서 바로 중세 후기 ‘一揆의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었다.³¹⁾

한편 가마쿠라 후기 몽골에 의한 두 차례(1274, 1281)의 일본 침입 이후 재지가 큰 혼란에 빠졌고, 그로 인해 1333년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였다. 재지무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足利尊氏は 무로마치 막부를 세우고 뒤이어 천황 측의 公家와 대립하였다. 이러한 公家와 武家の 대립과 武家 내부의 정쟁으로 약 60여 년간 남북조 내란이라는 전국적인 대혼란으로 이어졌다.

남북조 내란 초기부터 권력 측은 재지무사들에게 끊임없이 군사적인 충성을 요구하였다. 그 대가로 전투에 참여했던 재지무사들은 所領의 安堵와 새로운 恩賞을 권력 측에 요구하였다. 이렇게 재지무사들이 은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수단으로 一味同心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1339년(曆應 2) 규슈 五島열도 靑方지역의 재지무사의 一族이 공동으로 은상지를 요구하기 위해서 ‘一揆’를 결성하고 있다.

31) 峰岸純夫(1981) 『中世社会と一揆』 『一揆(1.一揆史入門)』 東京大学出版会 pp.44-46 참조.

恩賞不足의 일로 公方(將軍)에게 아뢰어야만 하는 일. 異論이 있을 수 없기에 一族 一揆하는 바이다. 삼가 아뢰입니다.³²⁾

이것은 은상 지급 요청과 관련해서 靑方 지역에서 一族이 一味同心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一揆’의 시작이었다.

이외에도 <표 1>에서와 같이 1336년(建武 3) 1월 규슈의 大隅國 禰寢氏 一族의 契約이 출현하였다. 이것은 一身同心의 連署를 통해서 일족을 결집하고, 일치해서 행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一族 一揆의 契約이었다. 또 1336년 2월 足利尊氏가 규슈에 내려왔다가 다음해 4월 교토로 돌아가던 시기 사이에 豊後國의 國人 67명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一揆를 결성하고 작성한 契約이 나타났다.

<표 1> 남북조 내란 초기 규슈지역의 一揆 契約

	연 도	연서자	문서종류	문서명
①	1336년(建武 3) 1월 11일	禰寢住人 6名	一族 契約	禰寢一族 連署起請文
②	1336년(建武 3)	豊後国人 67명	一揆 契約	角違 一揆 契約狀

한편 남북조 내란은 무가 측의 우세로 곧 종식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막부의 장군 足利尊氏의 집사 高師直와 장군의 동생 足利直義의 대립에서 시작된 정쟁은 ‘觀應擾亂’이라는 막부 내부의 권력싸움으로 확대되어 일본 열도를 더욱 큰 혼란에 빠트렸다. 그리고 이 정쟁은 친아버지 尊氏로부터 버림받고 直義의 양자가 된 足利直冬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으로 번져갔다. 1349년(貞和 5년) 直冬는 長門探題로 임명되어 하향하던 도중에 備後國에서 高師直 측의 공격을 받고 바다 건너 규슈로 피신해야만 했다.

直冬가 규슈로 내려오기 전에 규슈의 무사들은 將軍(鎮西探題) 측과 宮方(남조) 측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將軍의 명령을 받고 규슈에 내려와 있던 鎮西管領 一色範氏(道猷)는 규슈를 장악하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直冬는 규슈에서 자신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兩殿(尊氏·直義)

32) 『靑方文書』 曆応 2년(1339) 12월 25일 (『南北朝遺文』 九州編 2卷 <1459>).

恩賞不足段, 於于公方可被申之由事, 不可有子細之旨, 一族一揆所候也, 恐恐謹言.

의 뜻을 받들기 위해 내려왔다³³⁾고 하면서 재지무사들의 所領 확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재지무사를 성공적으로 포섭하고 지지 기반을 만들어 나갔다. 그 때문에 규슈지방은 장군·남조·直冬 측으로 삼분되었고, 재지무사들이 혼전하는 상태로 빠져들었다.

한편 1351년(觀應 2) 2월 尊氏와 直義의 일시적인 화의로, 같은 해 3월 直冬가 일시적으로 鎮西探題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7월 京都에 있던 直義는 모든 정무를 尊氏에게 반납하고 北陸로 도주하였고, 막부 내부는 다시 대립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국의 혼란은 備前國 地毗庄 山内氏 일족에게 자극으로 작용하였다. 규슈에서 直冬의 세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山内氏 일족이 一揆를 결성하여 直冬의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351년(貞和 7) 10월 작성된 ‘山内氏 一族 一揆 契約’이 그것이다.

契約한다. 一族 一揆의 일.

元弘 이래로 一族이 한 마음으로 將軍家로부터 은상을 받았고 當 知行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무렵부터 兩殿(尊氏·直義)의 불화 때문에 세상이 지금도 태평하지 못하다. 흑자는 宮方(남조측)이라 하고 흑자는 將軍家方(尊氏측) 및 錦小路殿方(直義측)이라 하면서 國人들의 생각이 제 각각이지만, (우리)一族은 武家の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일찍이 御方(直冬 혹은 直義)에게 軍忠을 다하고 전투에서 面目을 후세에 이어지게 하려 한다. 어찌 二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략).³⁴⁾

이것은 山内氏 一族 11명이 연서하여 만든 일족이 一味同心으로 直冬에게

33) 『周防吉川家文書』 貞和 5년(1349) 11월 19일 (『南北朝遺文』九州編 3卷, <2657>), “為奉息兩殿御意, 所打入也, 急速厚東周防權守(武藤)令同心合力, 可致忠節之狀如件”: 이것은 直冬가 규슈의 세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 선전이었으나, 규슈의 재지무사들을 直冬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34) 『山内首藤家文書』(『大日本古文書』) 貞和 7년(1351) 10월 2일 (『南北朝遺文』中国·四国編 3卷 <2148>).

契約 一族一揆子細事

右 元弘以來 依令一族同心 自將軍家預恩賞 當知行無相違者也. 爰自去年之秋比 兩殿御不和之間 世上于令不屬靜謐 而或号宮方 或稱將軍家 并錦小路殿方 雖為國人等所在區 於此一族者 浴武家御恩之上者 爭可奉志彼御恩哉 然早於御方致軍忠 欲揚弓箭之面目於末代 此上者更不可有二心哉 …(下略).

군충을 서약한다는 ‘契約’이다. 즉 中國 備前國의 재지무사들이 이 ‘契約’을 통해서 直冬 편에서 지지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규슈에서 계속되는 정쟁은 재지무사 내부에서 골육상쟁의 전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1352년(觀應 3) 肥前國 御廚庄 에서 松浦理를 중심으로 재지무사들이 소령 경계를 준수하고 상호 분쟁을 막기 위해서 ‘契約’을 맺었다.

契約한다.

肥前國 御廚庄내의 西浦目の 일. 대대로 점유하고 있지만, 宇久入道(實)殿와 緣이 있는 관계로 상호간에 一大事を 상담하여 수년 전의 소송을 그만 두고 양측의 知行分으로 나누는 바이다. …(하략).³⁵⁾

이것은 觀應擾亂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경험한 규슈의 재지무사들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든 ‘계약’이었다. 다시 말해 천하삼분의 대혼란 상황에서 권력 측의 요구에 따라 필연적으로 전투에 참여해야만 했던 재지무사들이 자력구제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족 간의 분열을 막는 방법으로 맺은 ‘契約’이었다.

그러나 1352년(文和 원년) 2월 直冬의 양부인 直義가 尊氏와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尊氏에게 독살당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直冬는 규슈에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렸고 점차 재지무사들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直冬는 규슈를 경영하는 동안 정치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켜 놓은 채, 같은 해 11월 中國 지방으로 퇴각해야만 했다. 그리고 막부 측의 鎮西管領 一色範氏마저도 떠나면서 규슈를 남조의 懷良親王 세력에게 넘어주었다.

그렇지만 규슈의 불안한 정치 상황은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하였다. 규슈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로마치 막부의 장군 足利義滿는 今川了俊을 九州探題로 임명하였다. 1371년(應安 4) 규슈에 내려온 了俊은 규슈의 재지무사

35) 『青方文書』 觀應 3년(1352) 10월 25일 (『南北朝遺文』 九州編 3卷 <3478>).

けいやく

ひせんの国御廚庄にし浦目事, 代代つかい申候といえとも, うくの入道殿そえんニよて、あいたかひニ一大事を申たんし候うえニ, 年来のそせうおさしおきて, りやうはうちきやうふんお別申候ところなり, …(下略).

들에게 전투에서 충성을 다하면 家가 보존되고 무사로서의 체면도 세우게 되며 난세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설득하는 書狀을 보냈다.³⁶⁾ 그리고 재지무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결집시켜 나갔다. 그런데 이 시기를 전후하여 <표2>과 같이 南九州 지역과 肥前國 松浦 지역에서 다수의 一揆 契約이 출현하고 있다.

<표 2> 今川了俊의 규슈 하향 이후의 一揆 契約

	연 도	연서자	문서종류	문서명
①	1366년(正平21) 8월 22일	宇久·有河住人 7명	連署 置文	宇久·有河住人 連署置文
②	1373년(応安 6) 5월 6일	五島住人 32명	一族 契約	五島 住人等 契諾狀
③	1377년(永和 3)10월 28일	南九州国人 60명	一揆 契約	(肥後·薩摩·大隅·日向) 南九州 国人一揆 契約狀
④	1384년(永徳 4) 2월 23일	下松浦住人 46명	一揆 契約	下松浦住人等一揆契諾狀
⑤	1388년(嘉慶 2) 6월 1일	下松浦住人 31명	一族一揆 契約	下松浦住人等一揆契諾狀
⑥	1392년(明德 3) 7월 5일	下松浦住人 34명	一揆 契約	下松浦住人等一揆契諾狀

특히 주목되는 一揆 契約은 肥後·薩摩·大隅·日向 지역의 ‘南九州 國人一揆 契約’³⁷⁾과 규슈의 서북쪽 肥前國 南·北松浦郡에서 재지무사들이 결성한 ‘下松浦 住人等 一揆 契約’³⁸⁾이다. 이미 松浦에서는 一揆의 성립 이전부터 連署契約狀·連署押書狀·連署置文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가 지역 공동체에서 자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계약이 ‘下松浦 一揆 契約’인데, 소규모 공동체의 성격을 탈피하여 광범위한 지역적 결합체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들을 直冬가 규슈에 내려왔을 때 결성된 ‘山内氏 一族 一揆 契約’과 마찬가지로, 一揆 내부의 상호 대립을 방지하고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일할 목적

36) 『禰寝文書』 永和 3년(1377) 12월 15일 (『南北朝遺文』九州編 5卷 <5435>) ; 永和 4년(1378) 3월 5일 (『南北朝遺文』九州編 5卷 <5456>).

37) 『禰寝文書』 永和 3년(1377) 10월 28일 (『南北朝遺文』九州編 5卷, <5422>).

38) 『青方文書』 応安 6년(1373) 5월 6일 (『南北朝遺文』九州編 5卷 <5031>) ; 『青方文書』 永徳 4년(1384) 2월 23일 (『南北朝遺文』九州編 5卷 <5814>) ; 『青方文書』 嘉慶 2년(1388) 6월 1일 (『南北朝遺文』九州編 6卷 <6058>) ; 『青方文書』 明德 3년(1392) 7월 5일 (『南北朝遺文』九州編 6卷 <6224>).

으로 만든 ‘계약’이었다. 그러면 각각의 계약의 내용 검토를 통하여 계약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 한·일의 ‘契’와 ‘契約’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비교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契’와 관련하여 1056년(문종 10)과 1131년(인종 9) ‘契’의 폐단, 『고려사』 『심우경전』의 ‘香徒契’, 1339년(충숙왕 8)에 공포한 ‘齋’의 금령, 1342년(충혜왕 3) 충혜왕 ‘祝壽齋’,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 1393년(태조 2)의 ‘香徒契’, 1398년(태조 7)과 1423년(세종 5) ‘향도계’의 장례 풍속, 1439년(세종 21) ‘香徒契’에 대한 사간원 진언, 1426년(세종 8) ‘향도계’를 통한 役의 징발 등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이처럼 고려와 조선에서 ‘계’는 민중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다. 고려의 국교가 불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계’의 행사가 佛事 혹은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서 市場의 형성과 운용과 관계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에서 백성들이 ‘香徒宴’를 베풀고 남녀노소가 모여 앉아서 같이 술을 즐기는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유희와 친목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체의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契’에는 佛事を 비롯하여 市場의 형성, 役의 징발, 종교의식, 齋會, 會飲, 葬禮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후기 百姓 申狀과 連署起請文의 출현하고, 이후 무로마치 초기에 ‘계약’으로 계승되어 규슈지역에서 1336년(建武 3) ‘角違 一揆 契約’, 1351년 ‘山内氏 一族 一揆 契約’, 1352년 ‘松浦理 契約’을 시작으로, 1373년 ‘五島 住人 等 契約’, 1377년 ‘南九州 國人 一揆 契約’, 그리고 1384년 · 1388년 · 1392년에는 ‘下松浦 住人等 一揆 契約’ 등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일본 사회에서 ‘계약’이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에는 규슈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권력 측의 군사력으로 동원되어야 했던 재지무사들이 일족 내지 地緣 공동체의 이합집산을 방지하고, 상호간의 소령지배를 둘러싼 분쟁의 사전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에 탄생하였다. 따라서 이 계약에는 상부

권력에 대한 충성, 소령 지배에 관한 규정(소송, 재판 등의 처리), 형사 처벌의 규정, 인신지배에 관한 규정, 衆議와 다수의견에 따른 결정 및 기타 규정(平等, 無緣) 등의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

그러면 한·일간 ‘契’와 ‘契約’의 분석을 통해서, 이것들이 고려·조선과 무로마치 사회를 규제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상호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契’와 ‘契約’의 내용 분석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契’와 ‘契約’는 모두 불교 의식과 토속 신앙이 관련되어 있었다. 『고려사』 『심유경전』에 기록된 ‘향도계’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契’를 결성하고 향을 피우는 풍속이 있고, 향을 피우는 의식을 전제로 ‘향도’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향을 피우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적 의식인지 확실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고 무속과 유불선의 복합적 종교가 존재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불교를 비롯한 여타의 종교, 혹은 토속 신앙을 통해서 맹세 의식이 거행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무로마치 시기 ‘계약’의 경우에는 앞 장에서 소개했던 1351년 ‘山内氏 일족—揆 계약장’, 1373년 ‘五島 주인 등 계약장’, 1377년 ‘南九州 國人—揆 계약장’, 그리고 1384년·1388년·1392년 ‘下松浦 주인 등—揆 계약’ 등에서 계약의 마지막 문구에 神의 징벌에 관한 내용이 있다.³⁹⁾ 특히 1388년 ‘下松浦 주인 등—揆 계약’에서는, 계약의 각 조항 내용을 어긴다면 日本 六十余州 大神 小神, 특히 八幡大菩薩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계약에서 八幡大菩薩, 天満大自在天神, 日本 六十余州의 大神 小神, 日本國中의

39) 『山内首藤家文書』(『大日本古文書』) 貞和 7년(1351) 10월 2일 (『南北朝遺文』 中国·四国編 3卷 <2148>).

『青方文書』 応安 6년(1373) 5월 6일 (『南北朝遺文』 九州編 5卷 <5031>), “若此条偽申候者 八幡大菩薩·天満大自在天神御罰於可蒙候.”

『禰寝文書』 永和 3년(1377) 10월 28일 (『南北朝遺文』 九州編 5卷, <5422>), “日本国中大小神祇, 殊者, 天照大神宮, 八幡大菩薩, 当国鎮守霧嶋権現御罰お各可羅蒙候.”

『青方文書』 永徳 4년(1384) 2월 23일 (『南北朝遺文』 九州編 5卷 <5814>), “日本六十余州大神小神 殊者 八幡大菩薩御罰各可罷蒙候.”

『青方文書』 嘉慶 2년(1388) 6월 1일 (『南北朝遺文』 九州編 6卷 <6058>), “若次条条偽申候者 八幡大菩薩御罰於各可罷蒙也.”

『青方文書』 明德 3년(1392) 7월 5일 (『南北朝遺文』 九州編 6卷 <6224>), “若此条条偽申候者 八幡大菩薩·天満大自在天神御罰各可罷蒙候.”

大小神祇, 天照大神宮 등이 등장하는데, 불교의 신과 토속의 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하여 구성원에게 맹세를 강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었다.

둘째, ‘契’와 ‘契約’의 성립 배경에는 자율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려와 조선의 ‘契’는 불상과 석탑의 조성, 燒香, 齋會, 會飲, 葬禮 등의 다양한 활동 목적을 가지고 만든 사회적 조직체였다. 그리고 ‘계’는 조직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지속적인 結社 모임이었다. 따라서 향촌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모임이라는 점이 ‘契’의 특징이다. 특히 남녀노소가 차례로 자리에 모여 앉아서 같이 즐기는 香徒宴은 일반인 사이에 일상적으로 전개되었던 서민적인 풍속이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유희와 친목을 공유하는 모임의 성격이 강하면서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민간 풍속이었다.

무로마치 시기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一揆’가 상부권력에 의한 타율로 성립하였고 보는 견해⁴⁰⁾와 일상생활에 관련된 자율적 의지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⁴¹⁾가 공존하고 있다. 당시 一揆는 공적 권력에 흡수되지 않은 자율적 의지의 결합체이며, 그 시대의 독자적인 존재로서 별개의 『空間』을 설정하는 조직체였다.⁴²⁾ 그리고 재지무사들은 ‘계약’을 통해서 자율적 결합을 바탕으로 지역 지배를 관철시켜 나갔다. 따라서 계약은 권력이 一揆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一揆가 상부권력을 보호 권력으로 선택하여 재지 지배를 지속해 가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⁴³⁾ 이것을 통해서 ‘一揆 契約’은 재지무사들이 스스로 지역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한 자치적 기능과 자율적 의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셋째, ‘契’와 ‘契約’에는 구성원 간에 실질적으로 평등성의 원칙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고려사』 『심우경전』에는 서로 윤번으로 연회를 배설하고 남녀노소가 차례로 모여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을 香徒宴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1336년(충숙왕 5) 공포한 禁筵의 여섯 번째 조항에 성안 부녀들이 귀하고 천함

40) 川添昭二(1950) 『今川了俊の南九州經營と国人層』 『九州史学』10 ; 長沼賢海(1958) 『松浦党の一揆契約について-未組職軍事力の組織化工作-』 『九州史学』10.

41) 佐藤和彦(1967) 『国人一揆の研究視覚』 『民衆史研究』5 ; 服部英雄(1983) 『相良氏と南九州国人一揆』 『歴史学研究』514.

42) 줄고(2004) 『일본 중세 일본사회의 「多分之儀」와 「平等」의 원리』 『文化史学』21, p.1141.

43) 줄고(2004) 『일본 중세 일본사회의 「多分之儀」와 「平等」의 원리』 『文化史学』21, p.1160.

(尊卑), 노소를 가리지 않고 香徒를 맺고 齋를 올리고 등불을 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계는 자연적 조직체로서 남녀, 尊卑, 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적 조직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무로마치 시기 ‘계약’에서 살펴보면, 계약장을 작성한 날짜 밑에 『孔子次第』⁴⁴⁾·『次第不同』라는 표기가 있다. 이것은 연서 사람의 서명 순서가 지위 고하와 관계가 없이 순서를 두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일본 중세문서에서 서명의 순서나 위치는 서명자의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서였다. 그런데 계약에서 『孔子次第』·『次第不同』은 연서명의 순서가 신분과는 관계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식을 내외에 공표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다.⁴⁵⁾ 또 1388년 ‘下松浦 住人等 一揆 契約’에서 장군의 大事에는 신분·지위의 높낮이를 따지지 말고 會습을 갖고 그 안에서 논의하고 ‘다수의 결정(多分之儀)’에 따라 서둘러서 전투에 참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대체로 계약은 장군의 군사 동원에 대해서 신분의 높낮이를 따지지 말고 모두가 다수의 결정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공동대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 적용의 대상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지무사들 상호간에 단순한 동료관계를 초월한 平等·對等 관계를 대전제로 깔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⁷⁾

넷째, ‘契’와 ‘契約’는 조직체에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수광의 『芝峰類說』에서는 우리나라의 풍속에 모든 鄉邑坊里에서契를 만들어 서로 바로잡고 단속하였는데 이를 香徒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가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로마치 시기 ‘계약’의 경우에는 所務 소송·境界 소송·싸움에 대해서 구성원의 회합에서 道理에 맞게 처벌한다는 강제적인 조항까지도 명시하고 있고,

44) 『孔子次第』에서 孔子는 쿠지(くじ)라고 읽는데, 같은 音讀으로 제비뽑기라는 의미의 籤(くじ)가 있다. 따라서 제비뽑기 순서에 의한 서명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신분의 高下를 따지지도 않고 서명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45) 줄고(2005) 『一揆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일고찰』 『일본역사연구』21, p.45-46 참조.

46) 『青方文書』嘉慶 2年(1388) 6月 1日 (『南北朝遺文』九州編 6卷 <6058>). “於公方御大事者, 不云分限大小, 令會合, 中途可談合, 而隨多分之儀, 急速可馳參.”

47) 줄고(2004) 『일본 중세 일본사회의 「多分之儀」와 「平等」의 원리』 『文化史學』21, p.1153 참조.

夜盜·強盜·山賊·海賊·放火·농작물을 몰래 베어가는 무리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면 死罪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⁸⁾ 여기에서는 구성원이 질서를 교란시키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 시정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다음에는 ‘契’와 ‘契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고려와 조선의 ‘계’는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희의 목적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술을 나누며 香徒宴를 베풀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유희와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의 성격이 강한 조직체였다.

둘째, 고려와 조선의 ‘계’는 국가의 役을 징발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1426년(세종 8)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연회에 소요되는 물자를 공인·상인과 각 관청의 노비 및 里의 香徒에게 맡길 것을 상소하였다. 또는 1429년(세종 11)에는 琉球國人の 장례에서 향도를 모아 장례를 치르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처럼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조직된 향도가 국가의 役 혹은 장례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무로마치 시기 ‘계약’에는 主君에 대한 군사적 충성을 통일하기 위한 기능이 있었다. 1351년 ‘山内氏 一揆 계약’, 1373년의 ‘五島 주인 등 계약’, 1377년 ‘南九州 國人 一揆 계약’, 1384년·1392년 ‘下松浦 주인 등 一揆 계약’에서 맨 앞의 첫 번째 조항에서 主君(直冬 혹은 直義, 將軍)에게 一味同心으로 軍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⁹⁾

넷째, 무로마치 시기 ‘계약’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夜盜·強盜·山賊·海賊 및 諸 財物·농작물(田畠作毛) 등의 盜人の 일

48) 『青方文書』 嘉慶 2年(1388) 6月 1日 (『南北朝遺文』 九州編 6卷 <6058>), “於一揆中, 所務弓箭境相論并市町路頭喧譁闕諍出來之時者, 先近所人人馳寄可有時儀, 若猶以及難儀者, 一揆一同令會合, 任道理可令成敗,” : “於夜討·強盜·山賊·海賊·放火·田畠作毛盜刈族者, 証摺分明者, 直可行死罪.”

49) 『山内首藤家文書』(『大日本古文書』) 貞和 7年(1351) 10월 2일 (『南北朝遺文』 中国·四国編 3卷 <2148>) : 『青方文書』 応安 6년(1373) 5월 6일 (『南北朝遺文』 九州編 5卷 <5031>), “君御大事時者, 成一味同心之思, 於一所可抽軍忠, 聊不可有思思儀矣.” : 『禰寢文書』 永和 3년(1377) 10월 28일 (『南北朝遺文』 九州編 5卷, <5422>), “下同事者, 為將軍家御方, 一味同心可致忠節候.” : 『青方文書』 永徳 4年(1384) 2月 23日 (『南北朝遺文』 九州編 5卷 <5814>), “於公私成一味同心之思, 可致忠節.” : 『青方文書』 明徳 3年(1392) 7月 5日 (『南北朝遺文』 九州編 6卷 <6224>), “君御大事之時者, 成一味同心之事, 早早馳參可致忠節云云.”

에 대해서, 1384년 ‘下松浦 주인 一揆 계약’에서는 죄인을 붙잡아 자백에 따라서 판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⁵⁰⁾, 1388년 ‘下松浦 주인 등 一揆 계약’에서는 증거가 분명하면 바로 死罪로 처리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⁵¹⁾ 또 1392년 ‘松浦 주인 등 一揆 계약’에서는 “大犯三箇條의 일, 本條(御成敗式目)의 뜻에 따라 엄하게 그것을 판결하도록 한다.”⁵²⁾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契’와 ‘契約’는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물론 시기에 따라 ‘契’와 ‘契約’에 모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자율적인 조직체, 불교와 토속 신앙의 관련성, 구성원의 평등성, 사회질서 교란에 대한 시정 등이 공통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계’가 일상생활의 유희적인 목적과 국가의役に 삼았었던 점과, ‘계약’이 주군에 대해 충성하고 형사처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고려와 조선의 ‘契’와 무로마치의 ‘契約’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여, ‘契’와 ‘契約’이 갖는 사회적 기능과 그 역할을 비교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계’는 ‘향도’, ‘향도계’, ‘향도연’ 등의 별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교 행사, 齋會, 會飲, 葬禮 등을 목적으로 민간에서 결성된 사회적 조직체였다. 반면에 ‘계약’은 가마쿠라 시기 백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連署申狀’, ‘連署起請文’에서 출발하여 무로마치 시기에 一揆의 ‘계약’으로 발전 진화하였다.

이렇게 ‘契’와 ‘契約’이 한국과 일본의 각기 다른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출현하였지만, 기능과 역할에서 몇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그 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사점으로는 첫째로 ‘契’와 ‘契約’는 모두 불교 의식과 토속

50) 『青方文書』 永徳 4년(1384) 2월 23일 (『南北朝遺文』 九州編 5卷 <5814>), “夜討・強盜・山賊・海賊并諸財物田畠作毛以下盜人等事, …(中略)… 先召取, 科者依白狀可有沙汰矣.”

51) 『青方文書』 嘉慶 2년(1388) 6월 1일 (『南北朝遺文』 九州編 6卷 <6058>), “於夜討・強盜・山賊・海賊・放火・田畠作毛盜刈族者, 証摠分明者, 直可行死罪.”

52) 『青方文書』 明德 3년(1392) 7월 5일 (『南北朝遺文』 九州編 6卷 <6224>), “大犯三ヶ条之事, 且任本条之旨, 堅可有其沙汰云云矣.”

신앙이 관련되어 있었고, 둘째로는 그 성립 배경에는 자율성이 있었다. 셋째로는 구성원 간에 평등의 원칙을 유지하였고, 넷째로는 조직체 내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즉 한·일 모두 불교와 토속신앙의 종교관을 갖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평등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된 사회적 조직체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리고 차이점을 든다면, 한국에서 '契'는 일상생활에서 기원하여 유희의 목적이 강하고, 국가의 역할을 징발하는데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일본에서 '契約'은 통일적으로 主君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고 구성원을 자치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2-15세기 한·일 양국의 사회는 전적으로 이질적인 성격의 사회가 아니라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일 관계 연구에서처럼 양국의 차별적 특성을 찾는 데 몰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일의 '契'와 '契約'을 통해서 양국의 공통된 사회적 기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 국가 안에서 미래지향적 공동의 사회현상을 찾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芝峰類說』, 『韓國金石遺文』,
『靑方文書』, 『南北朝遺文』, 『周防吉川家文書』, 『山内首藤家文書』, 『禰寢文書』.
김삼수(1964) 『韓國社會經濟史研究』 박영사.
김상기(1985) 『고려시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병하(1958) 『契의 史的 考察』 『경상학보』 7, 중앙대학교.
김보한(2004) 『일본 중세 일본사회의 「多分之儀」와 「平等」의 원리』 『文化史學』 21.
김보한(2005) 『一揆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일고찰』 『일본역사연구』 21.
김필동(1985) 『契』연구의 성과와 반성, 재정향-契의 사회사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 사회학연구』 8,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김필동(1986) 『삼국-고려시대의 香徒와 契의 기원』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4(한국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 지성사.
김필동(1987) 『고려시대 계의 단계개념』,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경산최흥기교수회갑기념논총』(현대 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한길사.

- 김필동(1988) 「조선시대 계의 조직구조적 성격과 그 변화」 『논문집』15-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필동(1992) 『韓國社会組織史研究』 일조각.
- 李海濬(1983) 「埋香信仰과 그 主導集團의 性格」 『金哲俊博士華甲記念 史學論叢』 지식산업사.
- 채웅석(1989) 「고려시대 향도의 사회적 성격과 변화」 『국사관논총』 2, 국사편찬위원회.
- 황철산(1961) 「향도(香徒, 郷徒)에 관하여」 『문화유산』 61-2.
- 青木美智南 外 編著(1981) 『一揆』(1-5卷), 東京大学出版会.
- 網野善彦(1987) 増補 『無縁・公界・楽』 - 日本中世の自由と平和 -, 平凡社選書.
- 藤木久志(1967) 「戦国法形成過程一考察」 『歴史学研究』 323号.
- 藤木久志(1968) 「室町戦国期における在地法の一形態」 『聖心女子大学論叢』 31・32.
- 白川静(1984) 『字統』 平凡社.
- 瀬野精一郎(1958) 「松浦党の一揆契約について - 未組織軍事力の組織化工作 -」 『九州史学』 10.
- 勝俣鎮夫(1979) 『戦国法成立史論』 東京大学出版会.
- 牧野純一(1914) 「松浦党の研究(下)」 『歴史地理』 24-6.
- 牧野純一(1914) 「松浦党の研究」 『歴史地理』 24卷 5号.
- 服部英雄(1983) 「相良氏と南九州国人一揆」 『歴史学研究』 514.
- 峰岸純夫(1981) 「中世社会と一揆」 『一揆(1.一揆史入門)』, 東京大学出版会.
- 勝俣鎮夫(1976) 「戦国法」 『岩波講座日本歴史』 中世 4.
- 長沼賢海(1934) 「松浦党の発展及び基の党的生活」 『史淵』 10・11.
- 長沼賢海(1958) 「松浦党の一揆契約について-未組織軍事力の組織化工作-」 『九州史学』 10.
- 入間田宣夫(1986) 『百姓申状と起請文の世界』 東京大学出版会.
- 佐藤和彦(1967) 「国人一揆の研究視覚」 『民衆史研究』 5.
- 佐藤進一(1971) 『古文書学入門』, 法政大学出版局.
- 舟越康寿(1938) 「隅田荘と隅田党」 『經濟史研究』 20.
- 川添昭二(1950) 「今川了俊の南九州経営と国人層」 『九州史学』 10.
- 村井章介(1975) 「在地領主法の誕生 - 肥前松浦一揆 -」 『歴史学研究』 419号.
- 村井章介(1976) 「今川了俊と上松浦一揆」 『日本歴史』 338号.

❖ 투고일 : 2011.06.30

❖ 심사일 : 2011.07.26

❖ 심사완료일 : 2011.07.28